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 · 지리적 명칭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지정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지리적 위치 등을 전달하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현실적 손해 [지재권 일반]** ·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이나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함.

**허수아비 특허 [특허]** ·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침해소송에서 경쟁자를 위협하려는 특허권자가 사용하는 잠재적으로 무효이거나 너무 광범위한 특허를 일컫음.

**허락실시권 [지재권일반]**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재권을 실시 내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허락실시권/위임 [지재권 일반]** ·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 특허법 등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구별됨.

-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위임은 도급과는 달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음. 수임인은 유상계약에 의하건 무상계약에 의하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허가-특허 연계 [특허]** · 특허기간 중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원 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네릭의 허가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